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544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8월 07일 발 의 자 :송재혁, 강대호, 권수정,

전시의, 전대오, 전다성, 김기대, 김기덕, 김정태, 김지대, 김기덕, 김청원, 김제리, 김혜련, 김태수, 김평남, 김혜련, 노승재, 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서윤기, 송도호, 오현정, 유왕성, 양민규, 오현정, 이광호, 양민규, 이경선, 이광성, 이정인, 임종국, 한기영, 전석기, 최정순, 한기영, 홍성룡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는 시장이 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당 연직 위원 중 하나를 '시 그린뉴딜 관련 부서의 장'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린뉴딜의 위상에 맞는 직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근거 조를 수정함(안 제5조)
- 나. 위원회의 위원 중 하나를 기존 '시 그린뉴딜 관련 부서의 장'에서 '시 그린뉴딜 관련 실·본부·국의 장'으로 변경함(안 제9조제3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・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그린뉴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제3조"를 "제2조"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그린뉴딜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제8조의 제목 "(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의 설치 등)"을 "(위원회의 설치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"를 서울특별시 그린뉴딜위원회"로 한다.

제9조제3항제2호 중 "부서의 장"을 "실·본부·국의 장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(생 략) ② 시가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 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그린뉴딜의 기본 원칙 및 제6조에 따른 그린뉴딜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	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2조
제6조(그린뉴딜추진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 략)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2. (생 략) 3. 그린뉴딜을 위한 재원조달 4. ~ 5. (생 략) ③ (생 략)	제6조(그린뉴딜추진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
제8조(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그린뉴딜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그린뉴딜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한다)를 둘 수 있다. ② (생략)	제8조(위원회의 설치 등) ①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생 략)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	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

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1. (생 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실·본부·국의 장</u> 2. 시 그린뉴딜 관련 <u>부서의 장</u> 3. (생략) 3. (현행과 같음) ④ ~ ⑤ (생략) ④ ~ ⑤ (현행과 같음)